(재)부산디자인진흥원 공고 제 2025 - 41호

「부산 디자인 캠퍼스(부산디자인스쿨 운영)」 2025년 참여 기업 모집 공고

부산광역시와 (재)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는 부산시-기업-대학과의 교육 협력을 통해 현장 맞춤 실무형 디자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2025년 **「부산 디자인 캠퍼스」** 사업의 참여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2025년 3월 31일
부산광역시장
(재)부산디자인진흥원장

1 사업목적

○ 산학협력 기반의 교육과정을 통한 현장에 바로 투입 가능한 디자인 특화 전문 인재 양성

○ 지속 가능한 디자인 인력양성 생태계구축 및 지역 청년 정주

2 사업개요

□ **(사업기간)** 2025. 3. ~ 2025. 12.

□ **(사업내용)** 협력 기업(현장학습) 선정 및 특화 프로그램 운영, 포럼 개최 등

□ **(지원규모)** 기업 3개사, 현장실습생 20명 내외
- 1개사 실습생 4~10인까지 지원 가능

□ **(지원내용)**

구분	주요 내용
지원 대상	(기업) · 부산 소재 중소, 중견기업으로 디자인 특화 프로젝트 운영이 가능한 기업 ▸3.신청대상 참조 · 본 사업으로 인재 양성 및 채용 의사가 있는 기업 (청년) · 만 39세 미만의 미취업 청년으로 디자인 관련 학과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·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
지원 내용	(기업) · 실무교육 지원비(실습비) ▸ 월 180만원/1인당, 6개월간 · 인재양성 활동비(멘토직원 수당) ▸ 월 150만원/1인당, 1회 (청년) 교육, 취창업 멘토링, 공모전 지원

□ (추진체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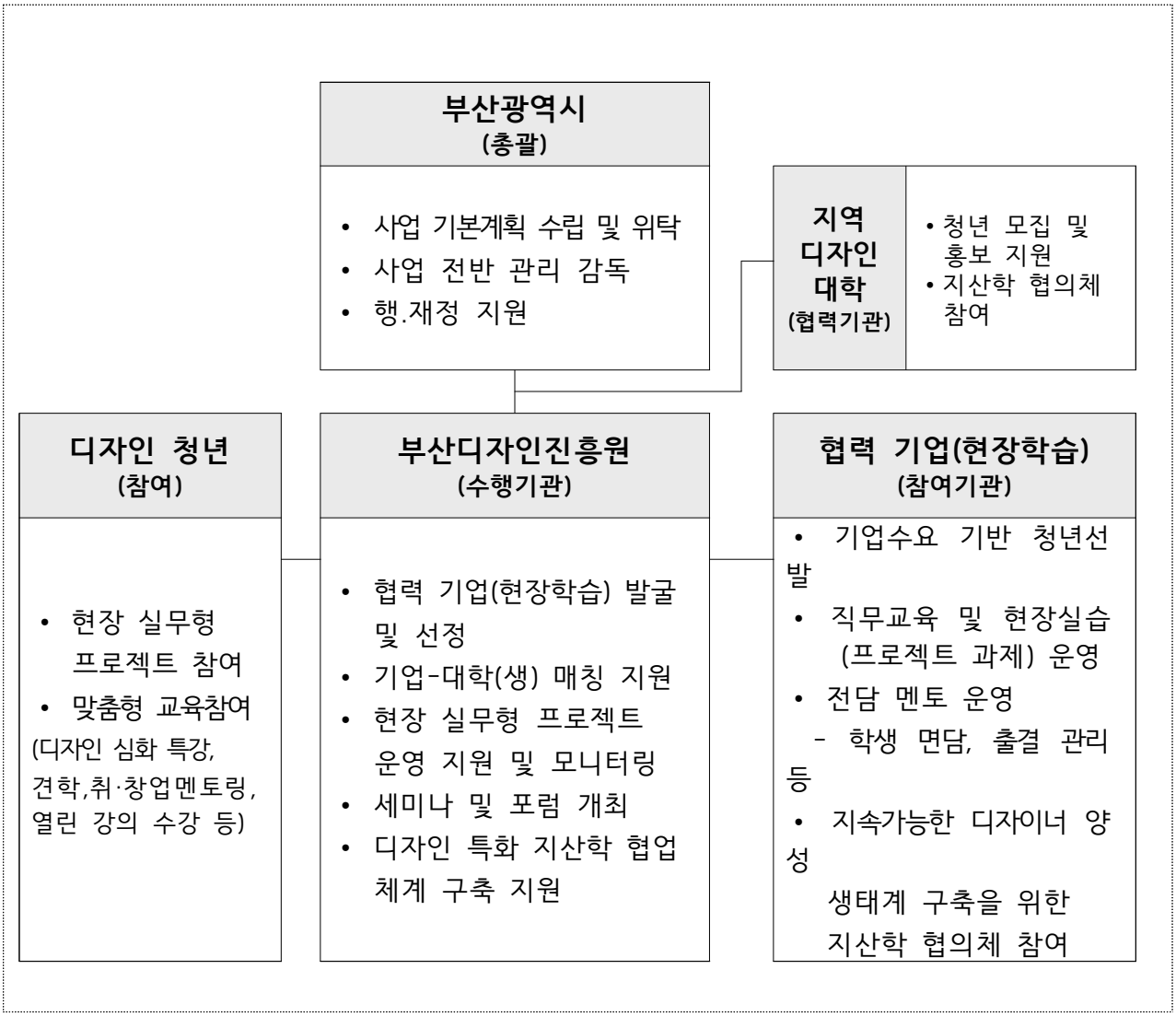

□ (추진일정)

3~4월	4월	4월	5월	5~10월	10~11월
참여기업 모집 ▶	심사 및 선정 ▶	참여 청년 모집, 교육(연중) ▶	청년-기업 매칭 ▶	현장 실습 ▶	청년 멘토링
진흥원	진흥원 (평가위원회)	진흥원	기업,청년	기업,청년	기업,청년

※ 사업 진행에 따라 상기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

3 신청대상

□ (신청자격)

ㅇ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기준 본사,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이 부산 소재일 것

ㅇ 인재 양성 및 채용의사가 있는 중소·중견기업 및 디자인 전문기업

기업 유형	자 격
중소기업	「중소기업 기본법」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
중견기업	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1항에 해당하는 기업
디자인 전문기업	「산업디자인진흥법」 제9조2항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기업

ㅇ 디자인 특화 프로젝트 운영이 가능한 기업

- 실습의 내용은 기업이 실무에서 필요로 하는 디자인 관련 직무분야*

*** 패키지, 제품, 시각디자인, 웹디자인, UX/UI 디자인 등**

- 실습인력(청년) 대상 직무, 업무관련 전담 멘토링 인력을 매칭하여 운영

ㅇ 근로자별 사무공간을 보유하고 있으며, 실습인력 대상 사무공간 제공이 가능한 기업

ㅇ 실습인력(청년) 대상 최저임금 지급 및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 기업

*** 월 209시간 기준 2,096,270원(2025년 정부공시 최저임금 ▸초과 지급 무관)**

□ (신청제외)

① 공고된 내용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적합한 경우
②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및 4대 보험 체납 사업장
③ 「민사집행법」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④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(단, 법원의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)
⑤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및 부도기업
⑥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'의견거절' 또는 '부적정'
⑦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
⑧ 기업, 기업의 장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 연구개발사업 관련 각종 보고서 제출, 기술료/정산금/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
⑨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2에 따라 체불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가 운영하는 기업
⑩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 공표 명단에 포함된 기업으로 명단 공개 기준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

4 접수 및 신청

□ **(접수기간)** 공고일 ~ 2025. 4. 21.(월), 14:00까지

□ **(접수방법)** 지원서 양식 다운받아 이메일 제출

- 제출처: infokyung@dcb.or.kr

□ **(제출서류)** 필수8, 선택1

구분		제출 서류명	비고
공통	1	부산디자인캠퍼스 참여기업 신청서 1부 [서식1] - 디자인 특화프로젝트 운영 계획서 포함	pdf/한글 모두 제출
	2	사전 서면 점검서 1부 [서식2]	pdf 제출
	3	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1부 [서식3]	
	4	정부사업 참여 이력 1부[서식4]	
	5	사업자등록증 사본	
	6	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각 1부(발급일 공고일 이후) *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: www.4insure.or.kr	
	7	2024년 매출액 증빙 1부 *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	
	8	지방세·국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* 정부24: www.gov.kr	
해당시	9	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증, 계획서 내 작성된 수상내역, 경력사항, 가점 등 해당 관련 기타 증빙서류	* pdf 제출 증빙 미제출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
▹ 파일명 예시: (참여기업신청서) 기업명
예) (참여기업 신청서) 부산디자인진흥원 / (사업자등록증) 부산디자인진흥원
▹ 유의사항 엄수하여 제출, 서명 등 기입란 필수 입력
▹ 선정 후 추가 서류 요청 가능, 일부 서류 원본은 최종 선정기업에게 요청 가능

※ 접수 마감일까지 온라인 제출 완료/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.

□ **(문의처)** (재)부산디자인진흥원 산업혁신팀 정보경

- **Tel**: 051-790-1083 / **E-mail**: infokyung@dcb.or.kr
- **주소**: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57 부산디자인진흥원

5 선정평가 및 추진절차

□ (선정평가)

○ 평가방법: 자격요건 및 신청서류 구비여부 등 사전검토 후 특화 프로젝트 운영계획, 수행 역량 등을 평가기준에 의거 종합적으로 평가

- 외부 전문가로 **평가위원회 구성** 운영 ▸ 디자인 분야별 전문가 5인 이상
- 서면심사 후 선정 기업대상 현장실사 진행

○ 평가기준: 평가항목별 심사

- **(서면심사)** ▸ 지원적합 여부 평가

평가항목	심사내용
기업역량	근로자수, 매출액 및 사업수행 능력 등
디자인 특화 프로젝트 운영	디자인특화프로젝트 운영계획의 적정성,구체성 등
현장실습 운영/지도계획	실습기간에 따른 실습생(청년) 지도 계획 구체성, 부여 디자인 직무의 범위· 수준 등 적합성
파급효과	실습생 채용의지 등 사업 성과확산 기대효과

- **(현장실사)** ▸ 실습환경 평가

평가항목	심사내용
조직	실제 사업장 운영 및 상시 근로자 근무 여부
	실습생 근무지 및 사업장 소재지 부산지역 여부
인프라	실습생 배치 부서 및 실습공간 환경
기타사항	상기 평가 항목 외 현장실사 시 현장실습 부적합 사항 등

※ 현장실사는 서면심사 통과 기업에 한하여 진행, 일정은 추후 안내 예정

○ 선정기준: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위원별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 점수 상위 기업 선정

※ 최고/최저점을 제외한 평가위원 별 점수 합산 후 최종 평균점수 산출, 평가점수는 공개하지 않으며, 평가 항목 및 배점 등은 절차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

○ 평가우대 및 가점: 해당 없음

□ **(결과통보)** 개별안내 및 (재)부산디자인진흥원홈페이지 내 결과공고

□ (추진절차)

추진절차	시행기관	일정(안)
신청·접수	신청기업 → 부산디자인진흥원	공고일~ 4.21.
⬇		
사전검토	부산디자인진흥원	‘25.4월 중
⬇		
서면평가 및 현장실사	부산디자인진흥원(평가위원회)	‘25.4월 중
⬇		
결과통보 및 이의신청	부산디자인진흥원 ↔ 신청기업	‘25.4월 중
⬇		
최종선정·협약체결	부산디자인진흥원 ↔ 선정기업	‘25.4월 중

*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

6 기타사항

□ (유의사항)

○ 공고내용 및 추진일정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

○ 다음의 경우 지원제외, 협약해약 및 제재 등의 조치 가능

- 접수기간 내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 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
- 3.신청대상에 명시된 ‘신청제외’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
-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

○ 관련 법령 및 규정은 반드시 숙지 및 준수하여 신청서류 작성

□ (의무사항)

○ 선정기업은 수행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, 현장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함

○ 실습생 중도퇴사 등으로 인한 조기 종료 발생 및 기타 기업의 주요정보(대표자, 주소 등) 변동 시 즉시 유선 및 공문 통보(10일이내)

○ 선정기업은 수행기관에서 동 사업과 관련하여 진행하는 사업 오리엔테이션, 교육프로그램 등에 기업 담당자 및 실습생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협조

○ 선정기업 및 참여 청년은 사업참여 성과 조사를 위한 설문조사 및 인터뷰 등에 협조하여야 함

【붙임】

- [서식1] 참여기업 신청서 1부
- [서식2] 사전 서면 점검서 1부
- [서식3] 개인정보 수집・이용・제공 동의서 1부
- [서식4] 정부사업 참여이력 1부